

대 만	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(2014년 12월 4일) / 홍콩aT센터

구분(택1)	핵심 내용
☒ (*통관) ☒ (*검역) ☐ (*라벨링) ☐ (*기타)	☐ 대만 「특정 식물 또는 식물 생산품 수입심사 비준방법」 명칭 및 조항 수정 초안 발표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☐ 주요 내용 ○ 「특정 식물 또는 식물 물품 수입심사 비준방법 (特定植物或植物產品輸入核准辦法)」 명칭 및 내용 개정 - 주관기관 : 행정원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(行政院農委會 動植物防疫檢疫局) - 시 행 령 : 農防字第1031494020A號 - 수정 초안 공포일 : 2014. 11.25 (7일내 의견 및 문의 접수 후, 의견 없을 시 정식 공포 예정) ○ 주요 개정 내용 - 명칭 수정 : 「특정 식물 검역물 및 물품 수입 심사 비준방법 (特定植物檢疫物及物品輸入核准辦法)」 - 본 방법은 식물방역검역법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정함(제1조 수정) - 현행 제2조 조항은 식물방역검역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속하므로, 그 규정을 삭제함 - 특정식물검역물 또는 물품 수입 신청 시 수입인은 관련 문건, 자료를 첨부해야하며, 의무 이행 사항 및 심사결과 평가 현황은 추가 기록됨(제2조 수정) - 수입 시 수입인이 처리해야 하는 수입신고, 운송 등의 사항을 규정함(제4조 수정) - 수입인이 식물검역물 또는 물품 및 기타 접촉 물품 처리, 변경격리처소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(제5조 수정) - 특정식물검역물 또는 물품 및 기타 연생물 연장 사용 허가 신청 작업 절차 신규 제정(제6조 수정) - 학술 실험 연구용 초파리류 및 기타 중앙기관이 공고한 특정 물품을 수입할 시 특정 제한 조치를 취함(제9조 수정)
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○ 대만 특정식물검역물 및 물품 수입 규정이 수정됨에 따라 對 대만 수출 시 해당 한국 농산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,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한 대비가 필요함 ○ 관련 웹사이트 http://www.baphiq.gov.tw/newsview.php?menu=1054&typeid=1055&news_id=10375
☐ 발표 일자/ 출처 : 2014년 11월 25일 대만 식물방역검역국 공고